[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 : 제 2025-001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데이터 이관 용역 사업」 입찰공고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데이터 이관 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데이터 이관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

○ 사업예산 : 금 이억원(2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기간 : 2025. 01. 13. ~ 2025. 02. 01(20일)
- 접수기간 : 2025. 02. 03.(월) 15:00 까지(시간 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방법 : 우편 및 택배접수

○ 접수처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 20층(NH서울타워)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경영지원팀 정재훈 행정원

※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일 15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문 의 처

- 사업관련 : 전략기획팀 이지은 연구원 (T:02-736-9037)
- 접수기간 : 경영지원팀 정재훈 행정원 (T:02-736-9023)

○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인지세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

마.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사.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아.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